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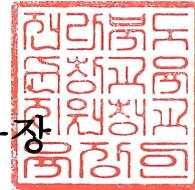
2021.3.1.자

순창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공고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20.8.19.)에 따른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과 동일기준 적용
 - 명칭 통일 및 적용범위 유목화
 - 본군→순창군
 - 전라북도 인사관리기준→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 국내 파견교원의 전보의 특례 추가
 - 파견기간 동일 근무 경력에 포함
 - 정원 관계로 타교로 복귀된 경우 파견 전 근무교로 전보 가능
 - 별표1. 교(원)감·교사 전보 서열부 평정기준 가산점 일부 변경
 - 서훈 및 표창점
 - 연구실적 평정
 - 연구 학교 근무 평정
 - 복식학급 담임교사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 유치원교사 동화 구연 대회 가산점
 - 장애인 부양 가산점
 -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
 - 순창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2. 읍지역 3개교 근무교사의 전보의 제한 완화
 - 읍지역 10년이상 근속교사의 전보의 제한
3. 제27조(복직자 및 파견 복귀자 배치기준)
 - 변동 사항 없음

2020. 7. 23. 개정

2021년 3월 1일 시행

유 · 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JEOLLABUKDOSUNCHANG OFFICE OF EDUCATION

【 목 차 】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신규 및 전입교사 학교 배치	2
제 3 장 교(원)감의 전보	3
제 4 장 교사의 전보	4
<별표 1> 교(원)감·교사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10
부 칙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교원의 자질을 높이고 안정된 여건 하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순창 관내 인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유치원 및 초등교원에 적용한다. <2020.7.23. 개정>

제3조(방침)

순창군의 유·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방침을 적용한다. <2020.7.23. 개정>

- ①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순창군의 인사관리기준을 제정 시행한다. <2020.7.23. 개정>
- ② 교원의 인사행정은 신상필벌의 각 항 규정을 적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신뢰풍토를 정착시킨다.
- ③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하여 전보함으로써 교원의 정신적, 경제적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 ④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장기근속 및 기타 불합리한 요인으로 인한 침체성을 배제하여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 ⑤ 인사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내신을 존중한다.
- ⑥ 순창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020.7.23. 개정>

제 2 장 신규 및 전입교사 학교 배치

제4조(임지 배치)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배치한다.

- ①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는 도지정 이상의 연구·시범학교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단, 희망자가 없거나 결원보충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연구·시범학교에도 배치할 수 있다.
- ② 도교육청 전보서열부에 의하여 상위자 순으로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③ 희망지, 생활근거지 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가급적 인접지역에 배치한다.
- ④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단,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⑤ 신규교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6.9.12. 개정>
- ⑥ 장애구분 모집에 의한 신규교사의 임지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16.9.12. 개정>

제 3 장 교(원)감의 전보

제5조(대상) <2017.8.22. 개정>

- ① 동일교 근속 2년 이상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교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자도 전보 희망할 수 있다.
가.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으로 관내 전보된 교(원)감은 6개월
나. 도서·벽지 근무자는 1년
- ②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동일교 근무년수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조치할 수 있다.
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된 자와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나. 학교경영실적이 부진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한 자
다. 사고나 물의 야기로 근무조건이 개선이 필요한 자

제6조(내신 시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내신에 의하여 전보서열을 정하여 배치하고, 학기 도중 전보요인이 발생 시는 추가 내신에 의거 전보할 수 있다.

제7조(순환 전보)

동일교 장기근속(일반학교 5년, 벽지학교 3년)한 자는 전보하되, 비경합 지구 학교이거나 희망자가 없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단, 동일교 장기근속 교(원)감 전보는 전보서열부를 작성하지 않고, 학교장의 요구나 학교 운영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전보의 제한)

- ① 신규 교(원)감 및 전입 교(원)감은 연구·시범학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단, 희망자가 없을 때는 배치할 수 있다.
- ② 순창읍 지역 3개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감은 읍지역내 타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단, 희망자가 없을 때는 전보할 수 있다.
- ③ 벽지학교에서 벽지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전보할 수 있다.
- ④ 전보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감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8.22. 개정>

제9조(서열부 작성)

교(원)감의 전보서열은 <별표 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하여 학교 급지별 가산점, 우대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상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다만 동점일 경우는 제10조에 의한다. <2017.8.22. 개정>

제10조(우선 순위)

전보 희망자가 동점으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전보한다.

1. (삭제) <2017.8.22. 개정>
2. [순창군 장기 근속자](#) <2020.7.23. 개정>
3. 교육 경력이 많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1조(기타 사항)

본 규정 외는 가급적 교사의 원칙에 준한다.

제 4 장 교사의 전보

(삭제) <2020.7.23. 개정>

제12조(대상) <2017.8.22. 개정>

- ① 동일교 근속 2년 이상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교 6개월 또는 1년 이상인 자도 전보 희망할 수 있다.
가.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으로 관내 전보된 교사는 6개월
나. 도서·벽지 근무자는 1년
- ②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일교 근무년수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된 자와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나. 학교(학급)경영실적이 부진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한 자
다. 사고나 물의 야기로 근무조건이 개선이 필요한 자

제13조(내신 시기)

전보는 매년 3월 1일 내신에 의하여 전보서열을 정하여 배치하고, 학기 도중 전보요인이 발생 시는 신규 또는 타시군 전입자를 발령할 수 있다.

제14조(전보의 제한)

- ① 부부 교원은 동일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 ② 읍지역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사는 읍지역 타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2020.8.19. 개정>
- ③ 연구학교에 근무한 자로서 연구학교가 종료된 지 1년 이내는 연구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단, 연구기간이 1년 이하의 연구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은 예외로 한다.)
- ④ 벽지학교에서 벽지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단,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 ⑤ 단위학교의 담임·교과전담 교사 중 한 성(性)이 100% 예상되는 경우에는 남·여 별도의 서열부에 근거하여 다른 성(性)을 우선 배치한다. <2017.8.22. 개정>
- ⑥ 전보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교사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2017.8.22. 개정>

제15조(순환 전보)

- ① 동일교 장기근속(일반학교 5년, 벽지학교 3년)한 자는 타교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경합지구 학교에서 장기근속한 자가 타 시·군 전보서열부에 등재되어 학년초 인사에서 미 발령된 자는 전보한다. 단, 도교육청의 유보선 이내인 자는 유보한다.

제16조(전보의 유예)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 정원의 10%(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에서 1년 동안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으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학교 만기근무자는 2년 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2019.8.16. 개정>
가. 업무 추진 상 유보가 불가피한 교사
나. 전국 소년체전 전북대표팀 육성 교사
다.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학교 연구 추진 주무교사
라. 재적인원 4/5이상 전보하게 될 경우 1/5에 해당하는 교사
마. 혁신학교 만기근무자는 2년 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바.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자는 유보할 수 있다. <2017.8.22. 개정>
- ② 유보기간 중 취득한 전보 가산점은 전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벽지 학교는 유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조(서열부 작성)

- ① 교사의 전보는 <별표1>의 ‘전보서열부 작성기준’에 의하여 서열부를 작성하며 상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단, 전보서열부의 작성 가산점은 <별표1>에 의한다.
- ② 전보서열부의 우대 가산점은 현임교 근무 기간 5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계산한다.
- ③ 경력평점에서 월 환산점으로 계산하고자 할 때는 14일 이하는 절사하고 15일 이상은 절상한다.
- ④ 전보서열부는 남·여 별도로 통합으로 각각 작성한다. <2017.8.22. 개정>

제18조(우선 순위)

전보서열부 작성 시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서열을 정한다.

1. (삭제) <2017.8.22. 개정>
2. 순창군 장기 근속자 <2020.7.23. 개정>
3. 교육 경력이 많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9조(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교원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입요청은 교원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에서 단위 학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벽지학교는 학교장의 교사전입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교사전입을 요청하는 학교가 연구학교인 경우에는 본 기준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다.) <2019.8.16. 개정>

제20조(초빙 교사제) (삭제) <2017.8.22. 개정>

제21조(전보의 특례)

- 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전보서열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보서열부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당해학교에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관내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열부를 작성하여 당해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 별도 서열부는 동일교의 근무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하며, 동일교 경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낮은 교사를 우선하여 작성한다.)
- ② 삭제 <2020.7.23. 개정>
- ③ 통폐합 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사 중 근무 기간이 미달된 자가 벽지학교를 희망할 경우 타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은 통폐합 전과 후를 합하여 계산한다. <2016.9.12. 개정>
- ④ 벽지학교 전입은 도서벽지 진흥을 위하여 최근 순창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복식학급 해소 자녀가 있는 전입교사(이하에서는 ‘자녀 동반 전입 교사’)가 주거지를 옮겨 희망할 경우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가. 자녀 동반 전입교사의 근무기간 중에는 자녀도 함께 재학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에서 자녀 재학이 도중에 불가능하게 되면 전보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정기 인사 때 전출하여야 한다(졸업생 제외).
나. 위 ‘4항’을 적용하고도 해당학교 학급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력에 관계없이 당해 학년 자녀 또는 기타 학생의 동반 전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⑤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부설 순창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파견 또는 겸임교사)는 벽지를 포함한 관내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017.8.22. 개정>
- ⑥ 시·도간 교류 파견교사는 수급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희망지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근무 기간은 동일 시·군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며, 타 시·도 교환 근무자가 교환 전 근무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귀할 경우 복귀 전·후 경력을 별도로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 ⑦-가. 해외 파견자는 복귀 후 경력 산정에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을 파견 전 학교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복귀 시 수급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희망지에 배치할 수 있다. <2020.7.23. 개정>
- ⑦-나. 국내 파견교원(시·도간 교류 파견교사 제외)의 파견기간은 동일 학교 근무 경력에 포함한다. <2020.7.23. 개정>
- ⑦-다. 국내 파견교원이 복귀할 당시 파견 전 학교의 정원 관계로 타교로 복귀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후 파견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 <2020.7.23. 개정>
- ⑧ 휴직자가 휴직 전 근무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직할 경우 복직 전·후 경력을 별도로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9.8.16. 개정>
- ⑨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순창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전보한다.

- ⑩ 폐교, 학급 감축, 정원 감축(과원 조정 포함) 등의 사유로 부득이 관내 전보된 교원은 전보 전·후 학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 기간에 산정할 수 있다.
<2016.9.12. 개정>

제22조(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 <2018.8.21. 개정>

교과 전담교사의 배치기준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관내에 배정된 교과전담교사 수가 기본 정원 미만인 경우, 초과인 경우 모두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배치한다.
단, 학생 수 산정일자는 2월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으로 하고, 대상은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으로 한다.
- ② 기본 정원 초과로 추가 배치된 교사는 ‘과원교사’가 아닌 ‘정규 발령’이므로 차기 정기 인사 시 강제 전보대상자가 아니며 과원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기까지 해당학교 근무를 보장한다. 단, 과원 요인 발생 시에는 해당 학교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및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2. 12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
3. 기타의 학교 가운데서는 학생 수가 많은 면 거점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제24조(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삭제) <2019.8.16. 개정>

제25조(순창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 선발) <2017.8.22. 개정>

순창영재교육원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 선발은 다음과 같다.

순창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가. 발명 또는 과학 대학원 이상 수료 교사	나. 발명교사 인증제 취득 교사	다. 발명 실용신안 등의 특허 출원 또는 등록 교사	라. 발명교육 직무연수 60시간 이수한 교사	마. 도대회 이상 발명경진대회 입상자 (지도 교사 포함)	바. 순창영재교육원 발명반 지도 경력
0.5점	1점	1회당 0.5점	0.5점	1회당 0.5점	연 0.5점 (월 0.04점)

- ① (적용범위) 가.~라.는 지역 제한 없으며, 마.~바.는 순창군 실적에 한한다. <2020.7.23. 개정>
- ② (마.항의 제한) 대회 인정은 별표 8항에 준하며,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바.항의 제한) 지도경력은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 ④ 합산한 점수의 상위자가 우선한다.

- ⑤ 동점자 우선 순위는 제18조에 준한다.
- ⑥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단설유치원 교사의 전보)

- ① 단설유치원의 근무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장기근속자는 병설유치원에 전보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시는 유보할 수 있다.
- ② 단설유치원 교사 전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가. 병설유치원 교사 중 단설 유치원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보서열부를 별도로 작성한다. 단, 전보서열부 작성에 따른 평점은 병설유치원 교사 기준에 준한다.
 - 나. 단설유치원 교사의 전보는 전보서열부를 작성하여 상위자 순으로 배치한다.
- ③ 단설유치원 교사 전보 조건은 순창읍 지역 2개교를 포함한 전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7조(복직자 및 파견 복귀자 배치 기준) <2018.8.21. 신설>, <2019.8.16. 개정>, <2020.7.23. 개정>

- ① 원적교 복직 및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휴직 및 파견 전 원적교 근무 기간에 대한 서열부에 의하여 배치한다.
 - 1. 휴직(파견 등) 또는 순환전보로 인한 결원 예정학교
 - 2.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배치
 단,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 교사(2주 이상)가 필요한 학교에 겸임 발령한다.
- ② (삭제) <2020.7.23. 개정>
- ③ 복직자 및 파견 복귀자의 동점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순창군 장기 근속자 <2020.7.23. 개정>
 - 2. 교육 경력이 많은 자
 -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별표 1>

교(원)감 · 교사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1. 경력점(동일교 최근 5년)

경력 평정기간은 그 평정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근속연수로 하되, 제1기, 제2기로 나누어 제1기는 최근 3년간으로 하며, 제2기는 제1기 전 2년으로 한다.

가. 제1기 3년 (최근 3년) - 연 10.0점(월 0.833점) <2016.9.12. 개정>

나. 제2기 2년 (1기전 2년) - 연 3.0점(월0.25점) <2017.8.22. 개정>

다. 경력점은 36.0점(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벽지학교 전보 시 **순창군** 근속 가산점을 부여한다. <2017.8.22. 개정>

- 1) 최근 10년의 기간을 가산한다.(단, 단절기간 이전(관외근무) 경력 제외)
- 2) 1년에 1점(월 0.083점)을 부여한다.
- 3) ‘라’ 항의 적용은 2014.3.1.자 근무 경력부터 적용한다.

2. 학교 급지별 가산점(1년간 가산점) <2016.9.12. 개정>, <2019.8.16. 개정>

가. 2020.2.29.까지 근무경력

급지	가산점	학교명	비고
1	0.50		월 0.041점
2	0.75		월 0.062점
3	1.00	순창, 옥천(순창동), 순창중앙, 옥천유치원, 순창교육지원청	월 0.083점
4	1.25	동계, 풍산, 금과, 팔덕, 구림, 유등, 적성, 인계	월 0.104점
5	1.50	쌍치, 복흥, 동산, 시산	월 0.125점

나. 2020.3.1.부터 근무경력

급지	가산점	학교명	비고
1	0.500		월 0.041점
2	0.625		월 0.052점
3	0.750	순창, 옥천(순창동), 순창중앙, 옥천유치원, 순창교육지원청	월 0.062점
4	0.875	동계, 풍산, 금과, 팔덕, 구림, 유등, 적성, 인계	월 0.072점
5	1.000	쌍치, 복흥, 동산, 시산	월 0.083점

3. 근무성적 가산점 (삭제) <2017.8.22. 개정>

4. 서훈 및 표창점 <2016.9.12. 개정>, <2017.8.22. 개정>, <2020.7.23. 개정>

가. 최고 훈격 1회분에 한하며 수상 시기는 제한이 없다.

나. 가산점 인정은 정기 전보(3.1.자) 해당년도의 1월 31일 이전에 수여된 서훈이나 포상으로 한다. <2017.8.22. 개정>

다. 가산점 인정 대상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2021.2.28.까지

훈격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장관 표창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
가산점	2.5	2.0	1.75	1.5	1.25	1.0

2) 2021.3.1.부터

훈격	훈장 및 포장, 모범공무원, 모범교원 대상(교육감)	대통령 표창, 모범교원상(교육감)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교육감 표창, 총(학)장 표창	교육장 표창
가산점	2.5	2.0	1.5	1.0	0.5	0.25

5. 연구 실적 평점(현임교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16.9.12. 개정>, <2020.7.23. 개정>

※ 인정 범위: 1년에 1종목 이상분만 인정한다. 공동연구실적은 1/N로 한다.

1) 2021.2.28.까지 취득한 연구 실적

등급 \ 규모	전국	시 · 도 규모	비고
1	1.5	1.0	
2	1.25	0.75	
3	1.0	0.5	

2) 2021.3.1.부터 취득한 연구 실적

등급 \ 규모	전국	시 · 도 규모	비고
1	2.0	1.0	
2	1.5	0.5	
3	1.0	0.25	

6. 연구학교 근무 평정 <2017.8.22. 개정>, <2020.7.23. 개정>

가. 교육지원청지정 이상 현임교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2018.2.28.까지 지정된 연구학교 인정점

지정 구분	교육부 지정	도 지정	군 지정 시범, 실험, 선도, 중심, 적용학교(발표학교에 한 함)
가산점	연 1.5 (월 0.125점)	연 1.25 (월 0.104점)	연 1.0 (월 0.083점)

2) 2018.3.1.부터 2021.2.28.까지 지정된 연구학교 인정점

지정 구분	교육부 지정	도 지정	군 지정 시범, 실험, 선도, 중심, 적용학교(발표학교에 한함)
가산점	연 1.5 (월 0.125점)	연 0.75 (월 0.062점)	연 0.5 (월 0.041점)

3) 2021.3.1.부터 지정된 연구학교 인정점

지정 구분	교육부 지정	도 지정	교육지원청 지정
가산점	연 0.5 (월 0.042점)	연 0.4 (월 0.033점)	연 0.25 (0.021점)

가) 도지정 시범유치원 원감(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

나) 교육지원청지정 시범유치원 원감 포함(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

다) 도교육청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 1년에 0.4점(2005년 3월 1일 근무한 교원부터 적용). 다만, 유치원교사는 1년 1회에 0.2점, 2회 이상은 0.4점(201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7. 교원 기능장 (삭제) <2017.8.22. 개정>

8. 각종 대회 지도 실적 우수교사 <2017.8.22. 개정>

대회		1위	2위	3위
전국 규모	단체	1.5	1.25	1.0
	개인	1.0	0.75	0.5
도 규모	단체	1.0	0.75	0.5
	개인	0.75	0.5	0.25

예) 상의 종류가 ‘금상, 은상, 동상’ 인 경우 ‘금상-1위, 은상-2위, 동상-3위’

예) 상의 종류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 경우 ‘대상-1위, 금상-2위, 은상-3위, 동상-제외’

가. 현임교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임교 1년에 최고 1종목으로 한정한다.

다. (인정대회)

1)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후원인 경우 제외)

2)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의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

라. (지도교사의 조건)

위 ‘다’ 항의 대회 중 지도교사임을 공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적에 한한다.(품의서, 출장상황 등은 불인정)

마. 연구 실적과 중복 가능

9. 효행교원 평점

가. 현임교 1회에 한정한다.

나. 시·군 단위 이상 기관장의 효행상(표창) 수상자는 위 ‘4. 서훈 및 표창점’ 훈격별 평정점에 10%를 가산한 점수를 부여한다.

10. 다자녀 양육교원 가산점 <2020.7.23. 개정>

가. 3자녀 이상 교원(단,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첨부)

나.

	2021.2.28.까지	2021.3.1.부터
가산점	0.5점	1.0점

다. 단, 부부교원일 경우 남·여 교원 모두 혜택을 부여한다.

11. 복식학급 담임교사 <2020.7.23. 개정>

가. 현임교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2021.2.28.까지 복식 담임교사	2021.3.1.부터 복식 담임교사
가산점	1년에 0.5점(월 0.041점)	1년에 0.25점(월 0.021점)

다. 다만,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는 1년에 0.5점을 부여한다.(월 0.042점)

1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2020.7.23. 개정>

가. 2021.2.28.까지 지정된 교사

- 1) 현임교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1년에 0.5점을 부여한다.(월 0.041점)

나. 2021.3.1.부터 지정된 교사

- 1) 현임교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1년에 0.25점을 부여한다.(월 0.021점)

13. 교과 전담교사 (삭제) <2018.8.21. 개정>

단, 2018학년도 실적까지는 인정한다. (현임교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월 0.041점)

교과전담 년수	1년	2년	3년	4년
가산점	0.5	1.0	1.5	2.0

14. 영어전보 가산점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전보 가산점
		PBT	CBT	IBT	
915이상	960이상	630이상	283이상	116이상	1.50
872이상	930이상	620이상	273이상	111이상	1.25
793이상	875이상	601이상	257이상	103이상	1.00
710이상	815이상	580이상	240이상	95이상	0.75
572이상	700이상	540이상	217이상	82이상	0.50
508이상	635이상	517이상	193이상	70이상	0.25

가. 영어기능장을 위 자격으로 획득하였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리한 것 하나만 사용한다.

나. 가산점 인정은 정기 전보(3.1.자) 해당년도의 1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점수로 한다.
<2017.8.22. 개정>

15. 순창교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교원 우대 가산점

가. 현임교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공교원 우대 가산점 대상은 연말 6대 영역(독서교육, 외국어교육, 학력신장, 영재교육, 인성교육, 방과후교육) 및 순창교육 유공교원으로 통칭된 교육장상 수상자로 한다. <2019.8.16. 개정>

다. <별표 1>의 ‘4. 서훈 및 표창점’ 과는 별개로 적용한다.

라. 1회에 1.0점

마. 서훈 및 표창점과 중복 가능

16. 유치원 교사 동화 구연대회 가산점 <2020.7.23. 개정>

가. 2021.2.28.까지 취득한 가산점

- 1) 현임교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도대회 이상으로 한정한다.

등급	1	2	3
가산점	1.0	0.75	0.5

나. 2021.3.1.부터 취득한 가산점 <2020.7.23. 개정>

- 1) 현임교에서 가장 우수한 입상분 1회만 가산한다.

등급	1	2	3
가산점	0.3	0.2	0.1

17. 교육부 또는 도교육청 주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교감 및 교사가. 현임교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수상 학년도말 기준 당해 학교에 1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 한정한다.
 다. 1회에 0.5점을 부여한다.
 라.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에 수상한 실적까지만 인정한다. <2017.8.22. 개정>

18. (삭제) <2014.12.23. 개정>

19. 학습부진아 지도 우수교사 가산점 (삭제) <2017.1.1. 삭제>

20. 장애인 부양 가산점 <2016.9.12. 개정>, <2020.7.23. 개정>

가. 2021.2.28.까지

- 1) 현임교 총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장애인 배우자(1급) 및 직계 존비속(1급)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에게 0.5점을 부여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정한다.
- 3) 증빙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나. 2021.3.1.부터 <2020.7.23. 개정>

- 1) 현임교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 장애인 배우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에게 1.0점을 부여한다.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정한다.
- 3) 증빙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한다. <2016.9.12. 개정>

21. 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 <2017.8.22. 개정>, <2020.7.23. 개정>

가. (삭제) <2020.7.23. 개정>

※ 2017.3.1.~2020.2.29. 실적까지 인정 [1년에 0.25점(월 0.021점)]

22. 감점 (삭제) <2019.8.16. 개정>

23. 순창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2020.7.23. 개정>

가. 2012.3.1.자부터 2021.2.28.까지 근무한 특수교사

- 1) 1년에 0.5점(월 0.04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2) 201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나. 2021.3.1.자부터 근무한 특수교사

- 1) 1년에 0.75점(월 0.06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4. 순창교육지원청 수업연구대회 (삭제) <2013.1.9. 개정>

25. 법정 학급 담임 교감 또는 수업 참여 교감 <2016.9.12. 개정>

가. 법정 학급담임교감 또는 주당 10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하는 교감은 1년에 1점을 부여한다.(월 0.083점)

나. 증빙 서류는 업무분장표나 학교교육과정 사본으로 한다.

26. 1학년, 6학년 담임교사 (신설) <2019.8.16. 개정>

가. 현임교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1년 0.25점(월 0.021점)

다. 2020.3.1.자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2013학년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4 군교육청(순창교육지원청) 수업연구대회 가산점 삭제 조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3.)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1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학교 급지별 일람표
2. 연구 시범학교 일람표

부 칙(2017.8.2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21.)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1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별표 1> 26. 1학년, 6학년 담임교사 가산점은 2020년 3월 1일 근무 경력부터 적용한다.
- ② <별표 1> 2. 학교 급지별 가산점은 2020.2.29.까지 근무경력은 기존 급지별 가산점을 적용하며, 2020.3.1.부터 근무경력은 개정된 급지별 가산점을 적용한다.

부 칙(2020.7.23.)

제1조(적용일) 본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학교 급지별 일람표

구분 학교명	시·군간 전보용			관내 전보용
	76.3.1	조정	조정	
순창초등학교	1	3 91.3.1		3
순창중앙초등학교	1	3 91.3.1		3
옥천초등학교	1	3 91.3.1		3
인계초등학교	3	4 91.3.1		4
동계초등학교	2	4 91.3.1		4
풍산초등학교	3	4 89.3.1		4
오산초등학교	3	4 89.3.1	5 91.3.1	4
금과초등학교	2	4 91.3.1		4
팔덕초등학교	3	4 91.3.1		4
쌍치초등학교	3	4 80.3.1	5 95.3.1	5
시산초등학교	4	5 89.3.1		5
북흥초등학교	3	4 80.3.1	5 95.3.1	5
동산초등학교	4	5 95.3.1		5
답동초등학교	4	5 95.3.1		4
적성초등학교	3	4 91.3.1		4
유등초등학교	3	4 89.3.1		4
구림초등학교	3	4 89.3.1		4
월정초등학교	4	4 76.3.1		4
옥천유치원	3	3 99.3.8		3

2. 연구 시범학교 일람표

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

학교명	연구영역	연구기간		비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순창초등학교	책가방없는 날	95	96	
순창중앙초등학교	인성교육	98	99	
동계초등학교	인성교육	98	99	

나. 도 지정 연구학교

학교명	지정영역	연구기간		비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금과초등학교	기술교실시범학교	91	92	
순창중앙초등학교	미술교육	91	92	
팔덕초등학교	과학교육	92	93	
동산초등학교	급식시범학교	92	93	
순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교육	92	93	
동계초등학교	환경교육	94	95	
팔덕초등학교	특별활동	96	97	
적성초등학교	인성교육	96	97	
월정초등학교	열린교육	97	97	
구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일제운영	96	97	
인계초등학교	열린교육	98	98	
쌍치초등학교	학교재량시간	98	99	
순창중앙초등학교	미래형선진학교	98	98	
구림초등학교	방과후활동	98	99	
순창초등학교	특수교육	98	98	
인계초등학교	열린교육	99	99	
금과초등학교	열린교육	99	99	
옥천초등학교	전통문화예술	99	2000	
옥천유치원	인성교육	99	2000	
순창초등학교	열린교육	99	99	
팔덕초등학교	열린교육	2000	2000	
북흥초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화	2000	2001	
동계초등학교(특수학급)	특수교육	2001	2002	
구림초등학교	체육교육	2001	2002	
동산초등학교	교육과정(사회)	2001	2003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육과정(주 5일제)	2001	2002	
팔덕초등학교	교실수업중심학교	2001	2001	
순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성 교육	2001	2002	
쌍치초등학교	자율 특색	2002	2003	
순창초등학교	독서 교육	2003	2004	
풍산초등학교	실과(노작체험활동)	2003	2004	
북흥초등학교	음악	2004	2005	
순창중앙초등학교	ICT가방활용	2004	2005	
팔덕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2005	2006	

학교명	지정영역	연구기간		비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동계초등학교	특수 교육	2005	2006	
순창초등학교	교과교육(영어)	2007	2008	
시산초등학교	방과후학교운영	2007	2007	
순창중앙초등학교	방과후학교운영	2007	2007	
풍산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2008	2008	
팔덕초등학교	다문화	2008	2009	
동계초등학교	학력신장	2008	2009	
시산초등학교	방과후학교	2008	2008	
순창중앙초등학교	방과후학교	2008	2008	
인계초등학교	방과후학교	2009	2009	
적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2009	2009	
쌍치초등학교	기초학력	2009	2010	
풍산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2009	2009	
옥천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2009	2009	
순창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2009.9.1	2010.2.28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2009.9.1	2010.2.28	
동산초등학교	경제교육	2010	2011	
순창초등학교	다문화	2010	2011	
북흥초등학교	독서토론	2010	2011	
유등초등학교	수월성	2010	2011	
시산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2010	2010	
구림초등학교	방과후	2010	2010	
인계초등학교	방과후(후속)	2010	2010	
적성초등학교	방과후(후속)	2010	2010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육과정자율화	2010	2010	
옥천초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2011	2012	
순창중앙초등학교	학부모 학교 참여	2012	2013	

다. 군 지정 연구 시범학교

학교명	지정영역	연구기간		비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율북초등학교	복식학급운영	92	92	
북흥초등학교	철학교실	92	92	
쌍치초등학교	어린이회운영	93	93	
순창동초등학교	환경교육	93	93	
북흥초등학교	특수교육	93	93	
순창초등병설유치원	관찰력	93	93	
적성초등학교	즐거운교실	93	93	
동계초등학교	교수-학습	93	93	
팔덕초등학교	국악교육	94	94	
순창중앙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94	94	
순창초등학교	향토애교육	94	94	
북흥초등학교	특수교육	94	94	

학교명	지정영역	연구기간		비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인계초등학교	과학교육	94	94	
구림초등학교	기초철학	94	94	
금과초등학교	학교경영쇄신	94	94	
순창동초등학교	교육방송	94	94	
순창중앙초등학교	국악교육	95	95	
순창중앙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95	95	
순창중앙초등학교	특수교육	95	95	
순창초등학교	향토애교육	95	95	
풍산초등학교	과학교육	95	95	
팔덕초등학교	교통안전	95	95	
적성초등학교	기초철학	95	95	
월정초등학교	교수학습개선	95	95	
순창동초등학교	교육방송	95	95	
순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역중심유치원교육	95	95	
순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교육	95	95	
유등초등학교	과학교육	96	96	
북흥초등학교	3인 3동행	03	03	
옥천초등학교	3인 3동행	04	04	
쌍치초등학교	환경교육	04	04	
시산초등학교	어깨동무333운동	05	05	
풍산초등학교	교육청특색사업운영	06	06	
동계초등학교	독서논술시범학교	07	07	
팔덕초등학교	독서논술시범학교	08	08	
순창중앙초등학교	독서논술시범학교	09	09	
팔덕초등학교	독서논술시범학교	2010	2010	